

# '96. 건설재해예방 정책방향

## 이 재 원

우리 협회 전문위원

건설안전기술사

## 1. 서 론

노동부에서는 '95. 12. 4 실시한 안전보건관계자 특별교육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달라진 제도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 바 있으며, 또한 최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향후 건설사업장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관계자들의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는 한편, 정부가 목표한 재해율 1% 미만 달성을 위한 '95년 사업의 평가 및 '96년도 산재예방정책의 기초와 추진 계획 및 지도감독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'9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사업의 확대와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, 시행할 계획이다.

## 2. 노동부 정책방향

### 1) '96. 산재예방의 기초

- '96년은
- 국민복지정책의 2차년도로서 국민의 「삶의

질」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

-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.

#### ● 노동부는

- '96년을 「자율안전관리기반 조성의 해」로 정하여 재해율 1% 미만 수준을 확실히 이어가고
- 특히, 중대재해 등 대형산업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전문화시켜 나가겠다.

#### ● 이를 위하여

- 근로자가 참여하는 예방활동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
- 취약업종에 대해 정기감독 부활, 시설개선비용 보조 등 지도·지원을 강화하고
- 작업환경측정, 건강검진기관의 능력향상 등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와 함께

-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추진운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한다.

## 2) 주요 재해예방 추진계획 및 지도감독사항

### 가. 산재은폐근절 재강조

-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각종 산업안전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그동안 산업재해감소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
  - 매년 국정감사 및 일부언론 등에서 산업 재해를 의료보험 및 자체공상처리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
  - 자칫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에 헛점이 있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.
- 따라서, 산재사고은폐방지를 위해
  - 매분기 1회 이상 의료보험환수사업장의 요양자 명단을 입수·확인하거나 근로감독관의 무재해목표달성 조사시나 사업장 방문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노동조합 간부를 면담하여 산재은폐여부를 확인하고
  - 은폐재해에 대해서는 조속히 산재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주와 피재자를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.
- 한편,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에 산업재해 발생시 「재해조사표」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「요양신청서」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토록 하는 등 산재발생보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바
  - 보고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 당분간은 안기 68300-909('94. 10. 14) 「산재사고 은폐예방 및 은폐사실이 인지된 경우의 조치기준」에 따라 처리하되 추후 별도의 조치기준을 시달할 예정할 예정이다.

### 나. 법정직무교육 및 사내교육 내실화

- 포스코개발의 중대재해 등 최근 대형사고의 원인 중에는 사내교육의 부실에 기인된 바 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
  - 각 지방노동관서는 교육시간 단축 등 개선된 교육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에 적극 홍보하며
  - 교육기관 역시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.
- 또한,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교육수강을 신청하도록 독려하고
  - 대리참석 또는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.
- 특히 부실교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은 물론
  - 대상사업장 지도·감독시에는 반드시 안전·보건 관계자 및 근로자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.

### 다. 범국민 안전문화 추진운동에 적극참여

- 범국민 안전문화 추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노총·경총·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「안전문화추진위원회」 및 「추진본부」를 구성하였고
  - 도지사,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의장으로 하는 「안전문화추진지역협의회」의 구성 및 산업안전공단 산하 13개 기술지도원에 「지역본부」를 설치·완료하였다.
- 앞으로 서울, 부산 등 전국 6개권역별 국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

- 「안전실천의 날」 지정운영 등 각종 행사 실시, 사업장·학교·가정 안전교육 자료개발 및 교육실시, TV 등 광고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 등 안전문화 추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·보급기로 하였다.
- 각 지방노동관서 및 재해예방단체는 등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.

### 라.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내실화

- '79. 9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재해운동을 보급한 이래 '95. 9월 현재 52,476개 사업장이 참여하여 1,957개 사업장이 무재해목표 3배 이상을 달성하였다.
- 무재해운동을 약 16년간 시행하다 보니 시행 초기의 열기가 다소 떨어지고, 달성 여부 조사 등의 절차를 행정규제로 인식하여 참여를 기피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
  - '96년도부터는 참여 사업장에 대한 동기 부여 방안으로 무재해 달성시 포상금 지급 또는 국내외 산업시찰 실시 등 구체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.
- 따라서 무재해운동의 취지를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고
  -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, 민간단체를 통한 기술·자료지원 등으로 내실있는 무재해운동이 전개되도록 하기 바란다.

### 마. 중·소규모 건설현장 「재해예방 기술지도제」 정착

- 노동부 및 공단의 지도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중·소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제

공하는 안전관리비 중 일부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('95. 3. 1).

- 기술지도대상
  - 공사금액 4,000만원~20억원 : 전담기술지도(월 1회)
  - 공사금액 20억원~100억원 : 정기기술지도(분기 1회)
  - ※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: 건설안전기술협회, 산업안전협회, 전기통신공사협회
- 이 사업은
  - 그 대상이 중·소규모 건설현장인 관계로 사업장의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
  - 관급공사의 경우는 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, 민간공사의 경우는 그 실적이 저조하다.
- 중·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
  - 기술지도기관은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기술지도의 내실화에 힘쓰고
  - 기술지도기관의 지부가 소재한 지방노동관서는 동 기관의 기술지도업무를 철저히 지도·감독하여야 할 것이다.

### 바.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지도

-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과 안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(총 공사비의 약 1.5%)에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
  - 건설업자가 안전관리비의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받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(P.Q)시 감점(최고 -3점)을 받도록 하였다.

- 일부 건설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
  -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
  - 중·소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관리비 내역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.
  - 또한 안전관리비 과태료 부과실적을 분석한 결과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없는 지방관서가 상당수에 달하고, 처분 횟수도 특정관서에 편중되고 있다.
- 과태료 부과시(P, Q 심사시 감점) 불이익 조치와 연계되므로 이의 신청이 없도록 조사를 명확히 하고
  - 과태료 부과 후에는 발주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본부에 즉시 보고
  - ※ 안전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시 계상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시 그 대상은 발주자임에 주의
  - 안전공단과 기술지도기관은 각종 기술지도시 안전관리비를 적정 사용하도록 지도 강화

**사. 지하철·고속전철 건설현장 관리철저**

- 지하철·고속전철 특별관리 대상현장은
  - 지하철(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) : 156개 현장, 경부고속전철(대전, 천안 시범구간) : 13개소이다.
  - 매반기별로 재해현황을 분석하여 재해율에 따라 청·황·적으로 분류

〈등 급 분 류〉

- 청색(양호) : 전현장 평균재해율 0.5배 미만(자율관리)
- 황색(보통) : 0.5배 이상-2배 미만(공단의 기술지도)

- 적색(불량) : 평균재해율 2.0배 이상으로서 재해자수가 5명 이상이거나 사망자수가 2명 이상
- ※ 사망자에 가중치를 부여한 환산재해율 적용

- 지하철·고속전철 현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대형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
  - 불량 현장에 대한 본부의 강력조치 지침과는 달리, 점검 후 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.
- 지하철·고속전철 현장을 점검할 때는
  - 반드시 본사 및 발주처에 통보하고 근로감독관, 공단직원,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

**아. 불량 가설기자재 유통 및 사용근절**

- 가설기자재는 추락·낙하·붕괴 등 재래형 재해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
  - 검정대상 품목은 비계 등 19개 품목이다.
- 가설기자재는 검정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주의 이해부족 및 검정품과 비검정품의 가격차이 등으로
  - 제조업자는 비검정품을 생산·유통시키고 있으며
  - 건설업자는 값싼 불량 가설기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.
- 불량 가설기자재의 유통 근절을 위해
  - 지도점검시 가설기자재의 검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미검정품일 경우 구입처 등을 역추적하여 제조업자도 강력히 조치
  - 특히 아나방은 경사로, 가설계단, 통로, 작업발판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

- 안전공단과 전문기관도 각종 기술지도시에는 검정품의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지도
- ※ '95. 2. 1 이전 생산·사용되는 미결정 가설기자재에 대해서는 안전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하도록 지도

### 3. '96 우리 협회 사업 추진계획

#### 1) 추진방향

우리 협회의 주요업무는 건설안전점검, 정밀진단 및 기술지도와 건설기술자 안전교육 업무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성수대교 붕괴 및 대구지하철 폭발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업무의 양적 증대는 가져왔으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'96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.

1. 안전점검, 진단 업무의 확대 및 과학화
2. 기술지도업무의 확대 및 질적 향상 발전
3. 건설안전교육의 내실화

#### 2) '95년도 업무 실적

##### ○ 안전점검, 진단 실적

- '95년도 안전 점검, 진단 업무는 건수를 기준으로 총 2,511건을 실시하여 '94년의 655건의 383%의 실적을 올렸으며
- 이중 안전점검은 '95년에는 247건으로 '94년의 153건의 161%의 실적을 보였으나 정밀진단은 '95년에 473건으로 '94년의 94%인 502건에 머물렀다.
- 기술지도 업무는 '95년 4월부터 추진된 사업

으로 총 1,791건을 실시하고 이중 서울지부가 1,091건, 광주지부가 206건, 부산지부는 213건, 대구지부는 281건의 실적을 올렸다.

##### ○ 교육 실적

- '95년도의 안전교육은 1,967명으로 '94년의 3,939명의 50%에 그쳤으나 '94년의 교육실적이 높았던 것은 1,018명에 달하는 무재해운동 실천교육과 1,373명에 달하는 현대건설 등 대기업의 위탁안전교육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.

### 3) '96년도 사업 추진계획

##### ○ 안전점검, 진단계획

'96년도 안전점검, 진단 계획은 작년 대비 191%인 4,800건으로 추정하였으며, 이중 기술지도는 작년대비 223%인 4,000건으로, 안전점검은 작년대비 113%인 280건으로, 안전진단은 작년대비 110%인 520건으로 추정하였다.

##### ○ 교육 계획

안전교육은 '95년 실적과 비슷한 2,000명으로 추정하고 이중 안전관리자 양성과정인원은 1,200명, 관리감독자 및 건설안전기사 보수교육 인원은 800명을 계획하고 교육의 내실화에 주력할 계획이다.

업 무	'95	'96	대 비	비 고
1. 점검, 진단	2,511건	4,800건	191%	
○ 기술지도	1,791건	4,000건	223%	
○ 안전점검	247건	280건	113%	
○ 안전진단	473건	520건	110%	
2. 안전교육	1,967건	2,000명	102%	